

산학협력중점교수임용규정

2011.02.01.제정	2012.01.27.일부개정	2012.08.01.일부개정	2012.09.01.일부개정
2015.03.01.일부개정	2015.03.27.일부개정	2018.07.01.일부개정	2020.09.01.일부개정
2021.04.01.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2021.07.16.일부개정	2022.04.01.일부개정
2022.08.30.일부개정	2022.11.21.일부개정	2023.09.01.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2.7.22.)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소정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대학과 산업체(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와의 상호 협력 증진을 주로 전담하는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2.1.27., 2012.9.1., 2020.9.1.)

제3조(임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활동 등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개정 2012.1.27.)

제4조(자격 및 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20.9.1.)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박사 학위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며, 석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 기준 완화 가능)
-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고, 그 명칭은 교수(산학협력중점), 부교수(산학협력중점), 조교수(산학협력중점)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5.3.27., 2021.7.16.)
- ③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2년간 계약제로 임용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2.9.1.)
- ④ 총장은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임용하지 아니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LINC3.0사업단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의견을 들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7.22.) (개정 2012.9.1., 2022.4.1.)

제5조(임용절차) ①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특별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며, 교무처장은 학(부)장 또는 LINC3.0사업단장의 채용요청을 받아 LINC3.0사업단장과 산학협력단장의 의견을 들은 후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개정 2012.1.27, 2012.7.22., 2012.9.1., 2018.7.1., 2021.6.1., 2022.4.1.)

② 신규채용을 위하여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3.0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채용요청 학과 또는 LINC3.0사업단장이 추천한 교원 2명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위원회(이하 “채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2.8.1., 2012.9.1., 2018.7.1., 2021.6.1., 2022.4.1.)

③ 채용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1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적임자라고 판단할 경우 총장에게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임용을 추천한다.

④ 채용위원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장은 최종면접을 실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7, 2012.7.22.)

⑤ 신규채용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교수초빙지원서(소정양식, 사진첨부) 1부
2. 경력 및 재직증명서(교수초빙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의 증빙자료) 각1부
3.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4. 산학협력 활동계획서(소정양식) 1부
5. 소지 학위별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1부
6. 소지 학위별 성적 증명서 각1부
7. 학위논문(석사, 박사) 각1부(소지자에 한함)
8. 자격증 사본 각1부(소지자에 한함)
9. 채용희망 학과(부)의 추천에 의한 경우에는 추천서

⑥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LINC3.0사업단장이 산학협력단장의 의견을 들어 교무처장에게 추천하며,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9.1., 2018.7.1., 2021.6.1., 2022.4.1.)

제6조(복무)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업 책임시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대비 30%이상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5.3.1.)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제3조에 규정된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전담으로 수행하여야하며, LINC3.0사업단장 및 소속된 학과(부)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7., 2012.9.1., 2015.3.1., 2022.4.1.)

③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7.)

④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교원 중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우 총장은 겸직 허가지침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2.1.27.)

제7조(재임용) ① 대학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 의사가 있는 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

② 대학은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2.9.1.)

③ 대학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위원회 심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2012.9.1.)

④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임용 업적평가 및 재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9.1.) (개정 2015.3.1., 2020.9.1., 2022.08.30.,2022.11.21.)

1. 2020.8.31. 이전 신규 임용자 : [별표1]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7조의2 제5항의 업적평가 대상 기간 내 총 취득점수가 670점 이상이어야 재임용 함.
2. 2020.9.1. 이후 신규 임용자 : [별표2]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7조의2 제5항의 업적평가 대상 기간 내 ‘연간 책임학점’ 및 ‘지도학생취업’ 점수의 합이 30점(신규 임용 후 최초 재임용 시에는 25점) 이상인 동시에 총 취득점수가 130점 이상이어야 재임용 함.
3. 2020.8.31. 이전 신규임용자 중 재임용 시 2020.9.1. 이후 신규임용자의 기준[별표2]에 의하여 평가받고자 할 경우 재임용 기준을 변경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추후 재변경은 불가 함.

제7조의 2(업적평가) ①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위원회(“이하 업적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7., 2012.9.1., 2020.9.1.)

② 업적평가위원회는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3.0사업단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2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2.9.1., 2018.7.1., 2020.9.1., 2021.6.1., 2022.4.1.)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9.1.)

④ 업적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9.1.)

⑤ 업적평가는 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의 업적에 대하여 실시하며, 재임용 대상 교원은 업적을 스스로 기록 관리하고, 재임용심의 신청시 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

⑥ 교무처장은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교무처장은 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한 후, 재심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 2021.6.1., **2023.9.1.**)

[중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중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0.9.1.]

제8조(보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연봉지급에 관한 세부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7, 2012.9.1.)

제9조(준용) 이 규정과 시행세칙 및 임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전에 임용된 산학협력교수는 이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제4조 제3항은 이 규정 시행전에 임용된 산학협력교수에게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4조 제4항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고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은 정관 제37조 제2항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2012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재직 중인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및 <별표1>의 개정내용은 2015년 9월 재임용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12.9.1.) (개정 2015.3.1., 2020.9.1., 2021.4.1.,2022.4.1.)

<재임용 업적평가표 - 2020.8.31. 이전 신규 임용자>

평가항목	평가척도	최대배점	비고
산업체 방문(취업, 편입생 유지, 현장실습/중소기업체험활동 업체 발굴 등)	1건당 1점	연간 최대 50점	
가족회사 신규 등록 또는 현장실습업체 신규 발굴	1건당 5점	연간 최대 50점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프로젝트 수주	이백만원당 1점	제한없음	본 대학 교원의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지원 포함
특허 출원 및 등록	1건당 출원 3점, 등록 15점	제한없음	
논문게재(주저자)	1건당 15점	제한없음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학술대회 발표 논문 제외)
기술이전 실적	100만원당 10점	제한없음	본 대학 교원의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 건수 포함
대학발전기금, LINC3.0사업단 장학금 유치 실적	100만원당 10점	제한없음	기술교류회 장학금 유치 제외
LINC3.0사업단 및 국책(대학)사업 보고서 작성에 참여	1건당 20점	연간 최대 100점	
졸업생 취업률 ¹⁾		평가기간 중 최대 150점	업적평가 직전연도의 대학 정보공시 적용
현장실습 학생지도 ²⁾ /더블 멘토링 학생지도	1명당 10점	제한 없음	방문지도/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기술교류회(산학협력협의회) 참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지자체 등)	본인 구성 30점, 기존 10점	연간 최대 60점	연간 3회이상 회의참석 건에 한함
기술경영지도 수행	1건당 10점	연간 최대 30점	
취업·창업동아리 운영 ³⁾	1건당 20점	연간 최대 60점	본인 지도 동아리에 한함
산학협력 정책 기획	1건당 30점	제한 없음	
언론 보도(본인 기고 혹은 본인 업무 내용과 관련된 보도)	1건당 30점	제한 없음	<삭제 2021.4.1.>
산업체제직자교육/동명인 인력양성 교육/산학클러스터 교과목 운영	1건당 20점	제한 없음	공공기관 교육사업 유치 및 시행도 인정
LINC3.0사업단 행사 참여 실적 (사전 공지된 행사에 한함)	1건당 3점	제한 없음	
수업평가 ⁴⁾	학기당 수업 평가점수	연간 최대 20점	
학생상담 실적 평가	건당 0.5점	평가기간 중 최대 50점	t_up에 등록된 상담기록
사업단 업적평가위원회 종합 평가 ⁵⁾		평가기간 중 최대 250점	LINC3.0사업단 업적평가위원회 평가

1) 졸업생 취업률 : 소속 학과 취업률이 대학 취업률 보다 높을 경우에는 ‘소속 학과 취업률 배점 기준’을 적용하고, 소속 학과 취업률이 대학 취업률 보다 낮을 경우에는 ‘소속 학과 취업률 향상도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단, 신설 학과의 경우 완성년도(6년)까지 소속 단과대학 평균으

로 하고, 소속 학과가 없는 교원 중 취업지원센터 소속 교원은‘대학 목표 취업률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소속 교원은 동일시기 재임용 대상자들의 평균 취득점수를 부여한다)

• 소속학과 취업률 배점기준

기준 \ 배점	0	60	80	110	130	150
대학취업률 대비 소속학과 취업률	0%미만*	0%이상~ 3%미만	3%이상~ 5%미만	5%이상~ 8%미만	8%이상~ 10%미만	10% 이상

• 소속학과 취업률 향상도 배점기준

기준 \ 배점	20	30	40	50	60
전전년도 대비 직전년도 취업률 향상도	3%미만	3%이상~ 5%미만	5%이상~ 8%미만	8%이상~ 10%미만	10%이상

• 대학목표 취업률 배점기준

기준 \ 배점	0	60	80	110	130	150
대학목표 취업률 대비 대학취업률	-10%이상	-8%이상~ -10%미만	-5%이상~ -8%미만	-3%이상~ -5%미만	-0.1%이상~ -3%미만	목표취업률 달성

※ 대학목표 취업률은 연도별 취업지원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2) 현장실습 학생지도

재임용 업적평가 대상 기간 초일 기준 3학년 학생이 없는 학과(부) 및 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 되지 않은 학과(부)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는 [별표1]의 적용을 받는 동일시기 재임용 신청자의 ‘현장실습 학생지도’ 취득점수의 평균점수를, 동일시기 재임용 신청자의 ‘현장실습 학생지도’ 취득점수의 평균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직전 시기 재임용 신청자의 ‘현장실습 학생지도’ 취득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함.

3) 취업·창업동아리 운영

취업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에 등록된 동아리 중 매월 운영 실적보고서 제출한 동아리만 인정.

4) 수업평가

수업미배정 등으로 수업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표1]의 적용을 받는 동일시기 재임용 신청자의 해당학기 평균 취득점수를 부여함.

5) 사업단 업적평가위원회 종합 평가

평가항목	평가척도	최대배점	비고
취업지원센터 회의 참여	회의참여도	50점	취업지원센터 자료 상 : 90% 이상 중 : 70% ~ 90% 미만
사업단 및 학내 부서 겸무/ 교외 위원회 참여	업무실적 평가	50점	취업지원실 겸무 제외/ 부서장 의견 반영
사업단 교내외 행사 진행, 교내외 발표 (우수사례 등) 및 MOU 체결	1건당 5점	제한없음	사회, 발표, 협약 등 (기안문서)
가족회사 의견 수렴	가족회사 평판도	50점	30개 가족회사 의견수렴
사업단 활동과 관련된 대외 수상실적	대외수상 실적	50점	-장관급이상: 50점 -기관장급이상:30점 -기타 단체 등: 10점
사업단 성과창출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1건당 10점	제한없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적(기안문서 등)
사업단장 업무 평가	근태 평가	50점	근무시간 준수, 품성

[별표2] (신설 2020.9.1.) (개정 2021.4.1., 2022.11.21.)

<재임용 업적평가표 - 2020.9.1. 이후 신규 임용자>

평가 분야	평가항목	점수 산출 기준	배점	비고
취업 및 교육	교수법 수강	건당 1점	<u>업적평가 대상</u> 기간 내 최대6점	
	연간 책임학점 ¹⁾	-충족 시: 6점 -2학점 이하 미충족 시: 4점 -2학점 초과~4학점 이하 미충족시: 2점 -4학점 초과 미충족 시: 0점	연간 최대 6점	
	수업평가 ²⁾	평가대상 기간 내 수업평가 평균점수	평가대상 기간 내 최대 10점	
	학생상담 지도	건당 0.1점(t-up 등록 실적)	연간 최대 10점	
	학생행사 지도	건당 1점 <u>-학과를 대표하는 학생행사 참여(OT, MT 등)</u> <u>-산업체 견학 인솔 및 취창업 관련 지도학생 외부 수상</u>	연간 최대 5점	<u>참여 기안문, 결과 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u>
	지도학생 취업 ³⁾	인당 5점 <u>-배점기준일 : 지도학생 취업일</u>	<u>업적평가 대상</u> 기간 내 최대60점	취업 후 퇴직자 포함
	현장실습 지도 ⁴⁾	-장기 현장실습지도: 인당 1점 -단기 현장실습 지도: 인당 0.5점	연간 최대 15점	이수 학생 수 기준
	더블멘토링 지도	인당 0.5점	<u>업적평가 대상</u> 기간 내 최대10점	
	<u>프로그램 참여</u>	- 리빙랩운영 : 건당 2점(최종 보고서 제출 시 인정) - TU-CIM 수업혁신법개발/운영 : 개발건당 2점, 운영 건당 1점 - 수업컨설팅 참여 : 건당2점	연간 최대 4점	
	취업·창업동아리 운영	-건당 2점(월별보고서 제출 회당 0.2점)	연간 최대 6점	지도교수가 회의에 참석한 월별보고서에 한하여 인정
산학 연구	<u>비교과 프로그램 운영</u>	-1M당 0.5점(교무처에서 인정한 경우) - t-UP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함 (BUP, CUP 학생동아리, 학술모임, 취업반 등)	연간 최대 3점	
	저서, 논문, 미술, 영상, 디자인, 건축설계, 도시설계, 조형물 ⁵⁾	-국제전문학술지, 국제규모 개인전, 국제규모 2인전, 국제규모 공모전 1등상: 건당 15점 -국제일반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국내·외 개인전, 국제규모 공모전 특선 이상: 건당 10점 -전문 학술저서, 번역서: 건당 3점	연간 최대 15점	
	재정지원사업 계획서 집필 ⁶⁾	<사업유치 성공 시> -10억 이상: 건당 12점 -10억 미만 5억 이상: 건당 9점 -5억 미만: 건당 6점	연간 최대 10점	

※ 평가항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대하여 업적으로 인정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 재임용 업적평가 대상 기간의 초일이 속한 학기부터 산정함.
- 2) 재임용 업적평가 대상 기간 내 수업평가 평균점수가 없는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는 [별표2]의 적용을 받는 동일시기 재임용 신청자의 ‘수업평가’ 항목 취득점수의 평균점수를, 동일시기 재임용 신청자의 ‘수업평가’ 항목 취득점수의 평균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직전 시기 재임용 신청자의 ‘수업평가’ 항목 취득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함.
- 3) 가. 산학협력중점교수 1인당 배정일 기준 미취업 4학년 재학생 중 12명을 취업지도 학생으로 배정하되 대상 인원이 부족할 경우 12명 미만으로 배정할 수 있음.
 나. 취업지도 학생은 학과(부)장이 배정하며 배정 시기는 매년 4월 또는 10월(당해 연도 2학기 신규 임용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함.
 다. 배정된 취업지도 학생은 배정일로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취업지도 학생으로 인정함.
 라. 재임용 업적평가 대상 기간 초일 기준 4학년 학생이 없는 학과(부) 및 미래융합대학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는 재임용 업적평가 대상 기간 내 업적 점수로 40점을 부여함.
 마. 1개 학년도 취업지도 학생 배정인원이 10명 이하인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는 재임용 업적평가 대상 기간 내 실제 취득점수(연간 최대 30점 초과 불가)와 30점 중 높은 점수를 부여함.
- 4) 재임용 업적평가 대상 기간 초일 기준 3학년 학생이 없는 학과(부) 및 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과(부), **미래융합대학**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는 [별표2]의 적용을 받는 동일시기 재임용 신청자의 ‘현장실습 지도’ 항목 취득점수의 평균점수를, 동일시기 재임용 신청자의 ‘현장실습 지도’ 항목 취득점수의 평균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직전 시기 재임용 신청자의 ‘현장실습 지도’ 항목 취득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함.
- 5) 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2-1> 및 <별표2-2>의 평가항목 중 점수 산출 기준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인정함.
 나. 건당 점수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분	단독연구	공동연구		
		2인	3인	4인 이상
건당 점수 인정비율	100%	70%	50%	30%

- 6) 가. 사업유치 성공 시 사업책임자는 ‘건당 점수 $\times(n-1)$ ’을 사업계획서 집필 참여자에게 배분함.
 n은 사업계획서 집필 참여자 수이며 n이 10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함. 사업유치 실패 시에는 사업계획서 집필 참여자에게 ‘건당 점수 $\times(1/n)$ ’을 부여함.
 나.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차별 확정 사업비를 기준으로 평가함.
- 7) 산학협력단이 특허권을 소유(단독 또는 공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8) 가. 교비대응 자금 및 외부지원기관의 연구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는 제외함.
 나. 연구책임자의 경우 ‘건당 점수 $\times 2/(n+1)$ ’, 공동연구원의 경우 ‘건당 점수 $\times 1/(n+1)$ ’로 인정함. n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수이며 n이 10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함.
- 9) 「직제규정」 및 산학협력단 직제 상의 보직 활동 시 인정함.
- 10) 공동으로 유치한 경우 ‘점수 $\times 1/n$ (n은 공동 유치자 수)’로 인정함. **업적 제출마감일 이후의 미반영**

장학금, 발전기금 기부 및 유치업적은 다음 재임용 업적평가에 반영가능(본인신청)